

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년 10월 27일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건설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년 10월 6일,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12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심사보류
제2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
제2차 건설복지위원회(2016.10.24.) 재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)

가. 상정 이유

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(2015. 1. 6.)과 관계법령 등의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

나. 주요 내용

- 1)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문 정비 (안 제1조, 제5조)

- 2)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 및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조항 삭제(안제4조, 제7조, 제10조)
- 3)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관계법령 법률명 정정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조례안 검토의견

-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개정하도록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, 상위법령인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(2015. 1. 6.) 사항과 관계법령 등의 개정된 내용이 제때 개정되지 않고 누락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에 대해서 반영하고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특이사항 없음.
-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는 과태료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과태료·수수료에서 과태료 부분을 삭제.
- 안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, 도로초과점용등을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에 관한 도로법 제72조에 따르면, 변상금 부과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, 우리구 조례에서는 부당점용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거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.
- 안 제5조와 관련,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은 점용료가 50만원

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이내에서 분할 납부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,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.

- 안 제8조제1항 관련, 상위법령인 「도로법」 제69조제1항은 도로 관리청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·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야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

우리구 조례는 '할수 있다'로 선택사항으로 정하고 있고, 「도로법」 제69조제2항은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한 경우에, 도로 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를 준용하도록만 정하고 있음에도,

우리구 조례는 「도로법」이 정하지 않은 내용인 “ 「국세징수법」 제23조(독촉과 최고) 조항까지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최고서 발급 등도 준용하도록 조례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수정하게 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.

- 안 [별표] 제10호와 관련하여,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르면, 점용료는 시행령 [별표 3]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

우리구 조례 [별표]에서는 법 시행령 [별표 3]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기준 중 제10호(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,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,

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)에 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추가한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생략)

5. 토론 요지 (없음)

6. 수정안의 요지 (없음)

7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(종로구청장인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함)